

●**고용노동부공고 제2024-379호**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·위험성,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26일

고용노동부장관

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

※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(<http://www.moel.go.kr> 뉴스·소식→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습니다.